싱가포르의 인도네시아 자산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역사가 빚어낸 관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갈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 대결정책(Konfrontasi) 시기에 인도네시아는 당시 싱가포르를 포함하고 있던 말레이시아의 결성에 반대하며 해협 건너로 공작원들을 보냈습니다. 1965년 초 인도네시아 해병 두 명이 오차드 로드의 맥도널드 하우스(MacDonald House)를 폭파했고, 1968년 이들이 처형되자 약 300명의 학생이 자카르타의 싱가포르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외교관계는 아세안(ASEAN) 창설 한 달 뒤인 1967년 9월 7일에야 수립되었습니다.[1] 그 뒤에 이어진 지역 외교는 제F편 제IV장에서 다룹니다.

경제적 유대는 곧 갈등의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하르토 대통령의 신질서(New Order) 체제 아래에서 인도네시아는 빠르게 성장했고, 대규모 기업집단 계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수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가문이 소유했습니다. 이들 가문에게 싱가포르는 자국이 아직 제공할 수 없던 것을 제공했습니다. 안정된 통화,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은행, 커먼로 법체계,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와 상업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통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들은 이 도시에 계좌를 열고, 부동산을 사고, 지주회사와 무역회사를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설립했습니다. 제D편 제III장에서 살펴보는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1998년 5월 자카르타 폭동은 이러한 자본과 가문의 이동을 가속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기업집단이 자금관리, 경영, 가문 자산의 일부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산의 규모

싱가포르에 보유된 인도네시아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오랫동안 추정과 소문의 영역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확실한 수치가 나온 것은 아래 제4절에서 살펴보는 2016–2017년 인도네시아 조세사면을 통해서였습니다. 2017년 3월 말까지 인도네시아 납세자들은 싱가포르에 보유한 자산으로 751조 1,900억 루피아를 신고했습니다. 이는 신고된 전체 해외자산의 73.08%에 해당하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7.48%), 홍콩(5.47%), 케이맨 제도(5.14%)를 크게 앞서는 수치였습니다. 당시 보도에서 도출되는 환율로 환산하면 싱가포르 몫은 약 560억 미국 달러에 해당합니다.[2]

이 수치는 실제 규모를 과소평가합니다. 참여자가 스스로 신고하기로 선택한 자산만 포함하기 때문이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맨 회사에 보유된 자산 가운데 상당수도 실제로는 싱가포르에서 관리되었습니다. 당시의 추정치는 싱가포르에 있는 인도네시아 자산 총액을 훨씬 높게 잡았습니다. 조세사면 종료 시점에 발표된 한 분석은 인도네시아인이 싱가포르에 약 2,600조 루피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약 650조 루피아는 부동산 같은 비투자성 자산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조세 분석가는 2016년, 싱가포르 은행 고객의 거의 60%가 인도네시아 국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3] 이 수치를 확인하는 공식 자료는 없으며, 아마도 역내 프라이빗 뱅킹 고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수치는 자카르타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 자산이 얼마나 중심적으로 비치는지를 보여 줍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싱가포르발·싱가포르 경유 투자 흐름

싱가포르는 또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최대 원천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투자자의 투자액은 2024년 201억 미국달러, 2025년 174억 미국달러로, 2025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에는 홍콩이 106억 미국달러, 중국이 75억 미국달러, 말레이시아가 45억 미국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28.6%인 2,055조 7,100억 루피아를 기여했습니다.[4]

이 통계는 직접 투자자의 국가를 기록합니다. 제I편 제I장에서 설명하듯이, 싱가포르 투자로 등록된 투자의 상당 부분은 동남아시아 사업을 싱가포르에서 관리하는 다국적 기업집단의 자본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국내 회사를 보유하는 인도네시아 가문과 기업집단의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싱가포르 은행과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 투자협정의 보호, 그리고 주주 간 분쟁을 위한 중립적 법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부 소유자는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산의 최종 소유권을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시야 밖에 둘 수 있었으며, 이것이 자카르타가 거듭 투명성 강화를 요구해 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양국 간 조세조약은 이러한 흐름의 틀을 제공합니다. 원래의 협정은 1992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개정 협정은 2020년 2월 4일 싱가포르 측 인드라니 라자(Indranee Rajah)와 인도네시아 측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가 서명했습니다. 개정 협정은 사용료와 지점이윤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고, 원천지국에서 일정한 양도차익을 면세하며, 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을 반영합니다.[5] 개정 조약은 2021년 7월 23일 발효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6] 새 조약의 주요목적 기준(principal purpose test)으로 인해,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장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프라이빗 뱅킹, 패밀리오피스, 그리고 인도네시아 고객

싱가포르 프라이빗 은행들에게 인도네시아는 수십 년 동안 싱가포르 자체를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단일 시장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객은 전통적으로 싱가포르 현지에서 서비스를 받았으며, 고객이 은행가를 찾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흔히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며, 프라이빗 뱅킹과 가문 기업집단을 위한 기업금융을 결합합니다. 싱가포르의 현지 은행들도 인도네시아에 자체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DBS, OCBC, UOB는 모두 인도네시아 은행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국내 사업에 관한 지식을 얻습니다.[7]

조세사면 이후 인도네시아 가문 자산의 구조는 달라졌습니다. 한때 번호계좌나 명의계좌에 보유되던 자산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신고되고 자동 정보교환에 따라 보고됩니다. 많은 가문이 자산을 싱가포르에 그대로 두면서 신탁, 지주회사, 단일 패밀리오피스로 재편했습니다. 그 과세 취급은 제E편 제III장과 제E편 제IV장에서 다룹니다. 동기는 비밀유지에서 안전으로 옮겨 갔습니다. 루피아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분산, 국제 투자에 대한 접근, 승계 설계,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호가 그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고객은 제I편 제II장에서 살펴보는 중국 고객과 함께 여전히 이러한 구조의 가장 중요한 이용자에 속합니다.

주

1. Wikipedia, “Indonesia–Singapore relation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In early 1965, two Indonesian Marines blew up the Macdonald house building in Singapore”; 1968년 두 해병의 처형으로 약 300명의 학생이 자카르타의 싱가포르 대사관을 습격함; Wikipedia, “Indonesia–Singapore relation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Indonesia and Singapore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on 7 September 1967.”. ↩
2. “Singapura sumbang repatriasi tax amnesty terbesar”, *Kontan*, 2017년 3월 29일, 국세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axes) 인용: 싱가포르 소재 해외자산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신고액 751조 1,900억 루피아(73.08%),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76조 9,200억 루피아(7.48%), 홍콩 56조 2,700억 루피아(5.47%), 케이맨 제도 52조 8,600억 루피아(5.14%); “Tax Amnesty Program Indonesia Ended, What Are the Results?”, indonesia-investments.com, 2017년 4월 3일: 신고 자산 총액 4,865조 7,000억 루피아가 약 3,660억 미국달러로 제시되어 있어 1달러당 약 1만 3,300루피아의 환율이 도출됨; 싱가포르 수치의 환산은 저자의 계산임. ↩

3. “Tax Amnesty Program Indonesia Ended, What Are the Results?”, indonesia-investments.com, 2017년 4월 3일: 인도네시아인은 싱가포르에 약 2,600조 루피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약 650조 루피아는 부동산 같은 비투자성 자산으로 추정됨; “Upaya Singapura Cegah Repatriasi Dinilai Tak Langgar Hukum”, *Hukumonline*, 2016년 7월 27일, Center of Indonesia Taxation Analysis의 유스티누스 프라스토워(Yustinus Prastowo) 인용: “Hampir 60% nasabah perbankan Singapura adalah WNI”. ↩

4. “Top 5 Foreign Investor Countries in Indonesia 2025, Singapore Dominates”, *Databoks* (Katadata), 2026년 1월 19일, 2026년 1월 15일 투자부/BKPM 기자회견 인용: 싱가포르 174억 미국달러(본문에서는 30.9%, 요약에서는 30.1%), 홍콩 106억 미국달러, 중국 75억 미국달러, 말레이시아 45억 미국달러; “Singapore, the Largest Investor in Indonesia in 2024”, *Databoks*, 2025년 및 BKPM을 인용한 기타 보도: 2024년 201억 미국달러(로산 로슬라니(Rosan Roeslani) 장관, 2025년 1월 31일 기자회견: 200억 7,000만 미국달러); “Singapore, the Largest Source of Foreign Investment in Indonesia Over the Last 15 Years”, *Databoks* (Katadata), 2026년 10월 27일, 투자·다운스트림 산업부/BKPM 인용: 2,055조 7,100억 루피아, 2010–2025년 전체 외국인투자의 28.6%. ↩

5. 싱가포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보도자료 “Singapore and Indonesia Sign An Updated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 2020년 2월 4일(mof.gov.sg): 인드라니 라자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가 서명; 개정은 “lowers the withholding tax rates for royalties and branch profits”, “provides for tax exemption in the source State for certain capital gains” 및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incorporates internationally-agreed standards to counter treaty abuse"; 기존 조약은 "has been in effect since 1992". ↩

6. IRAS, "Updated Singapore-Indonesia Agreement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Enters into Force"(ir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협정은 "entered into force on 23 July 2021"; Sovereign Group, "Revised Singapore-Indonesia tax treaty brought into force", 2021년 9월 16일: 양 당사국의 비준에 따라 7월 23일 발효, "effective as of 1 January 2022". ↩
7. DBS(PT Bank DBS Indonesia), OCBC(PT Bank OCBC NISP Tbk), UOB(PT Bank UOB Indonesia)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에 관하여는 세 그룹의 2025년 연차보고서 참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